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
제2022-04호

2022년 제4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2022. 9. 13.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
 - 지역·산업 현장의 세부 훈련 수요 등을 조사하고,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발굴·심사 추진
- 훈련과정을 운영하거나, 그에 참여하려는 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우대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 추진

□ 사업 목적

- 산업구조 변화,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산업 분야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 활성화

□ 수행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21.8.17. 개정, ’22.2.18. 시행) 제12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사업 내용

-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훈련·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발굴·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훈련 참여를 지원

□ 지원산업 및 직종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대상 산업·직종	○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경영 또는 고용상의 어려움이 발생 및 예상되어, 해당 분야 종사자 등에게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고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	재직자 등의 고용유지, 이·전직 지원
육성산업·직종	○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	훈련 및 인력 수요 발굴, 양성 필요 분야

2 2022년 제4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 훈련규모

- 300명

□ 훈련과정 모집 산업·직종

- 부산지역 육성산업·직종

-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 신청 유형
 - (전직 및 취·창업훈련)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 (신규 채용자 훈련)
 - (고용유지훈련)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재직자 훈련)
- 부산지역 전략산업 분야별 정의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설계

전략산업 분야	전략산업 정의	유망품목
첨단융합기계부품산업	○ 전통적인 기존 기계부품산업에 특수한 기능의 수행을 위한 ICT 기술 융합, 내재화로 신기능을 창출하고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후방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산업	○ 스마트제조 물류 자동화시스템 (AGV, AMR 등) ○ 지능형 생산공정 자동화 기계 ○ 스마트제조 로봇시스템(협동로봇, 용접 등) ○ 커넥티드 ICT 융합 기계부품 ○ 다기능 하이테크 융복합 소재 ○ AI 기반 스마트제조공정 분석 기술 ○ ICT 융합 스마트제조 로봇시스템
친환경미래에너지산업	○ 탈탄소화 및 ESG경영 확산 등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에너지 부품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 창출을 위한 산업	○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부품 ○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부품 ○ 에너지 저장관리 시스템 기술 ○ 친환경·고효율 경량 소재 ○ 지능형 발전 및 송배전 시스템 ○ 친환경 에너지 파워반도체 모듈 ○ 에너지 기기 고장진단 기술 ○ 원전해체 및 제염기술

전략산업 분야	전략산업 정의	유망품목
라이프케어산업	의료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융복합한 첨단의료기기, 바이오기술과 연계한 고령친화기기, 헬스케어 제품, 항노화,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하는 제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 중입자 가속기 기반 첨단의료 서비스 - 라이프로그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 진단 치료기기 및 생체신호 측정기술 - 치의학 제품 및 서비스 - 비대면 의료서비스 - 해양유래 기능성 식품 및 항노화 제품 - 건강취약계층 재활 및 보조기기
지능정보서비스산업	빅데이터 처리·분석, AI 지능·데이터 기술(ICBM)에 기반한 정보 결합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의 제조·생산활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분석함으로써 스마트 제품 생산 및 기술주도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블록체인 기술기반 보안 플랫폼 - 센서(무인이동체 등) 기반 스마트 도시 실증 서비스 - 상호작용 체감형 AR/VR 콘텐츠 - 해양·항만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서비스 - 도시 문제 해결형 디지털 트윈 - 지능형 유통·물류 서비스 플랫폼 - 초연결 기반 융합지능 서비스 기술

자료: 부산광역시, “2022년 부산지역산업진흥계획”, 2021

○ 제4차 모집 육성산업·직종

부산지역 전략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첨단융합 기계부품 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25924 절삭가공 및 유체산업	160103 금속가공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160104 표면처리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160105 용접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190107 전기공사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7 전기공사

부산지역 전략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첨단융합 기계부품 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140803 해양플랜트설계·설치·운용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150101 설계기획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150301 기계조립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0502 냉동공조설비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가공기계 제조업	150801 선박설계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0301 기계조립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150602 자동차제작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	150603 자동차정비
			160104 표면처리
			150803 선박의장생산
			150807 선박장비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160105 용접
친 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150502 냉동공조설비
			170302 기능성정밀화학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170402 고무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261 반도체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60103 금속가공
			160104 표면처리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160105 용접
			190105 전기기기제작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26291 전자충전기 제조업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부산지역 전략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친 환경 미래 에너지 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28112 변압기 제조업	190107 전기공사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9 기타기관 및 터빈 제조업	140803 해양플랜트설계·설치·운용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150101 설계기획
		29132 가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50301 기계조립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0502 냉동공조설비
			150801 선박설계
			150201 절삭가공
라이프 케어 산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40705 양중기계운전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210101 식품가공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210102 식품저장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품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210101 식품가공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170302 기능성정밀화학
		204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212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70402 고무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170302 기능성정밀화학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170402 고무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2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170202 기초유기화학물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50101 설계기획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부산지역 전략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90303 정보통신기기개발 200201 유선통신구축 200202 무선통신구축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50602 자동차제작 150802 선체 건조 150803 선체의장생산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7 전기공사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 기계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150301 기계조립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312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드론)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100101 일반·해외영업 150201 절삭가공 150301 기계조립 170302 기능성정밀화학 170401 플라스틱 170402 고무 200105 정보기술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80201 디자인 100301 e-비즈니스 190303 정보통신기기개발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3 정보기술운영 200104 정보기술관리 200106 정보보호 200201 유선통신구축 200202 무선통신구축

부산지역 전략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080201 디자인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612 전기통신업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150803 선체의장생산 150807 선박정비 200202 무선통신구축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080201 디자인 100301 e-비즈니스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90303 정보통신기기개발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3 정보기술운영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00201 유선통신구축
			200202 무선통신구축
			080201 디자인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 훈련기관 참여 요건

○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조)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공공 또는 지정)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등급 미보유 기관이더라도 참여 가능

- (인증보유 기관) 심평원의 인증(1~5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심사 미진행
- (인증 미보유 기관) 심평원의 인증평가를 거친 이력이 없는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
 -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 기관) 준법성 및 훈련성과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 불가
 - (인증평가 이력이 없는 신규 기관)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

※ 신규훈련기관 대상 심사기준

- 최근 1년간(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 아래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부적정 판단

구분	필수 확인 항목(4개)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준법성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 (시정명령) 처분당 1점 감점 ○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 과정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 처분당 5점 감점 ○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①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②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③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①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②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구분	필수 확인 항목(4개)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준법성	② 임금체불 이력 여부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③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재정 건전성	④ 세금체납 여부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불인정서류 제출은 10점 감점 적용

○ 훈련기관(시설) 유형별 제출 증빙자료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훈련법인·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편성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 등 게시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정관 ○ 소속 회원사 명단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기타	○ 정관

※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현재 실시가능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 훈련과정 신청

○ 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정으로 한정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심사·승인 이후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 등에 따라 변경

○ 훈련기관별 훈련과정 최대 신청 수: 2개

○ 신청 유형을 구분하여 공모, 접수

- (고용유지훈련)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

※ 고용유지훈련을 우대하여 심사

- (전직 및 취·창업훈련)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

○ NCS 필수 적용 기준 충족 여부 면제

-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 편성 시 NCS 기준 필수 적용 면제 가능

- 단, 훈련비의 지원단가 등의 적용을 위해 NCS 직종 분류는 반드시 제시,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은 유사·적당한 직종으로 설정(심사 시 NCS 설정의 적정성 판단)
· 훈련과정의 내용상 가장 많은 시간으로 편성된 직종을 NCS 직종으로 제시

○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

구분	과정 편성 기본요건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 훈련대상별 훈련과정 최소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 (전직 및 취·창업훈련)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 (고용유지훈련) 2일 이상, 16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강의실	○ 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 - (전직 및 취·창업훈련, 고용유지훈련)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
실습장	○ 실습실(실습장)의 최소 면적 기준(권고) - NCS 적용과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훈련과정이 분류된 NCS 직종상 훈련 기준의 50% 면적 ※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면적 기준 적용 ※ NCS 훈련기준상 기준인원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의 최소면적은 기준 인원에 필요한 시설면적의 100% 적용
기타	○ 기타사항 -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 준수

○ 훈련비 우대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를 기본 인정(훈련비 심사 및 정산 미실시)

※ 단,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부산지역에 옮겨 개설하는 등 특성상 기본 지원 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훈련비 우대 미적용

- 육성산업·직종 훈련과정은 훈련비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단가의 300%까지 지원 가능(훈련비 정산)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인정 제한 분야

-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호가목(사내대학), 나목(기술대학),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 ④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⑤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 ⑥ 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
- 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과정 포함). 단,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 공통 법정직무훈련 과정 등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취업서비스(전직지원) 관련 훈련과정
-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훈련시장 공급이 과다하거나 종사인력이 많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분야의 과정 등
 -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 또는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정

○ 중복 훈련과정의 참여 제한

- 중복 훈련과정
 - 훈련기관 A가 통합심사를 거쳐 훈련과정 B를 이미 운영하는 경우(훈련물량 증대 목적)
 - 훈련기관 A가 이전 통합심사에 훈련과정 B의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훈련과정의 내용상 부적합 판단을 받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훈련심사 우회 목적)

- 중복 훈련과정의 소명

- 중복훈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산인자위는 해당 훈련기관에 훈련과정의 개설 필요성, 타 훈련과정과 내용상의 차이점 등에 대해 소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 훈련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 불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 참조

□ 훈련생 지원내용

○ 훈련비

- 훈련참여자에게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국비 지원**
- 계좌한도에서는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우대

구분	주요 내용
훈련비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	○ 계좌한도에서 200만 원만 차감 - 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훈련비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2항 훈련비 지원액 참조

※ 수강신청 시 재직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인 사람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로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며 수강신청 및 참여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 지원(월 11.6만 원 등)

※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22년 기준)

구분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 유형 중 특정계층	월 최대 11.6만 원	월 최대 11.6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 원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 원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6만 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 원	월 최대 36만 원

○ 특별훈련수당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매월 최대 20만 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 (훈련과정) 부산인자위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일 것
-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 수×1만 원'으로 산정

○ 생계비 대부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리로 생계비 대부

※ '22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 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000만 원 한도
- ③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3 2022년 제4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심사기준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표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I. 훈련기관 심사	1. 훈련기관 심사*	① 준법성 및 재정 건전성	적정 / 부적정						
	1. 훈련과정 NCS 직종 분류의 적정성	① 모집 산업·직종과의 부합 여부 ② 모집 산업·직종에 따른 NCS 설정의 적정성	적정 / 부적정						
II. 훈련과정 심사	2. 훈련 기본요건의 적정성	①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직종 부합 여부	적정 / 부적정						
		② 과정편성 기본요건(훈련시간 및 기간, 강의실 등 최소 기준) 충족 여부	적정 / 부적정						
	3. 훈련과정의 적정성	① 인정제한 분야 해당 여부	적정 / 부적정						
		② 훈련과정의 인정 필요성 여부	적정 / 부적정						
		가. 훈련 및 인력 수요의 부합성	적정 / 부적정						
		나. 훈련과정의 중복성 여부	적정 / 부적정						
		③ 훈련과정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가. 훈련내용	5	4	3	2	1	0	
		나. 훈련교·강사	5	4	3	2	1	0	
		다. 훈련장비	5	4	3	2	1	0	
		라. 훈련시설	5	4	3	2	1	0	
		마. 훈련방법	5	4	3	2	1	0	
	4. 훈련목표의 적정성	① 연간 훈련가능인원**의 적정성	적정 / 부적정						
		② 훈련목표 설정의 적정성	적정 / 부적정						
	5. 훈련비***	①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 충족 여부	적정 / 부적정			미해당			
		② 훈련비 산정의 적정성	적정/부적정/조정			미해당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 미보유 기관만 심사

** 훈련정원과 동일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초과 시 심사(통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 결과, 심사항목 중 ‘부적정’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훈련과정 선정 불가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선정 요건

○ 훈련비 심사 신청 기본 요건

-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
-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실습비를 고려할 때 **고급·특수과정**에 해당

< 고급·특수과정의 요건 >

연 번	요 건	세 부 내 용
1	훈련 교·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한 훈련과정 ①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③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2	훈련내용	○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 ○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
3	훈련 대상자	○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 ○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 ○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
4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1~4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특수과정으로 인정**

- NCS 지원단가의 130%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은 회계정산 대상에 포함, 회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고용센터가 정산 실시)

※ (**정산 시기**) 정산 대상인 훈련과정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향후 결정('23년 6월 이후)

※ (**정산 방법**) 심사 및 훈련비 승인 결과에 해당하는 '훈련실시계획서, 훈련비산출내역서'와 '훈련비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세부 정산계획은 정산 시기에 재안내 예정)

※ (정산 시) 고정비 및 변동비 비목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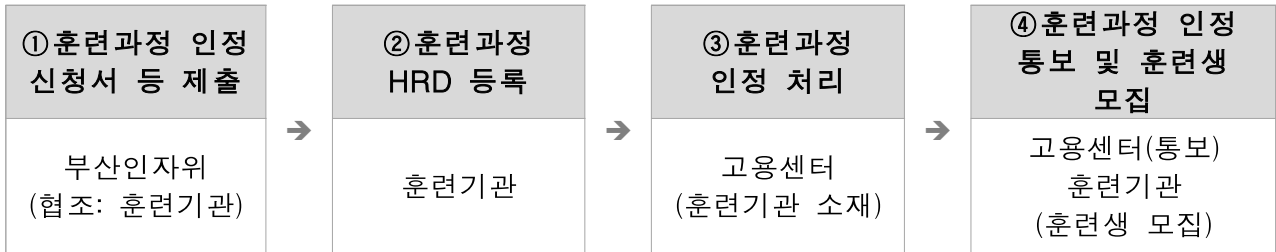
고정비	훈련 실시인원(중도탈락자 포함) 기준으로 인정되는 훈련비 비목	강사료, 시설비(임차비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홍보비
변동비	훈련생 출석률 기준으로 인정되는 훈련비 비목	교재비, 실습비, 장비비, 기타훈련 비용, 운영지원비

* 훈련과정의 정산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용, 정산계획 별도 시달 예정

** 기타간접비용은 10% 초과 사용(최대 15%) 시 전체 사용금액을 증빙하여야 하며 훈련관련성 및 적정성 확인 예정

4 2022년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확정 및 승인

□ 훈련과정의 인정 및 개설



① (부산인자위) 확정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를 최소한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② (훈련기관) HRD행정지원시스템에 해당 훈련과정 등록 처리 및 신청
· 훈련과정 입력사항

구 분	내 용
기본정보	훈련기관정보(기관명, 훈련기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기관유형, 소재지), 훈련과정명(담당자 연락처 등), 주야 구분, 정원, 훈련일수(시간) 등
훈련과정 내용	훈련목표, 훈련가능인원, 훈련내용, 훈련시간표, 훈련대상자, 훈련수준 등
훈련과정 상세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교·강사, 훈련교재 등
훈련비 산출	훈련비 등

③ (고용센터) 제출된 신청서 및 실시계획서의 내용이 부산인자위에서 승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 후 인정 처리

④ (고용센터) 부산인자위의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부산인자위 및 훈련기관에 통지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 (고용센터)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또는 수강신청 등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상담 생략

□ 훈련과정의 내용 변경

- (부산인자위 및 고용센터)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하여 변경 인정·신고 등의 절차 필요
 - 훈련교·강사, 강의·실습실, 훈련장비·교재 등의 변경이 해당하며,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 불가
 - ※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제3항 등 심사평가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적용
- 훈련내용 변경 시 유의사항
 - 훈련 실시 전 훈련과정 내용 변경 시 부산인자위와 사전 협의
 - 훈련과정 교·강사 변경인정의 기준
 - (요건 1) 변경 전 교·강사와 변경 예정 교·강사의 직종(NCS 소분류)이 일치할 것
 - (요건 2) 변경 예정 교·강사가 변경 전 교·강사와 동일한 수준(점수) 또는 그 이상의 강사일 경우 변경 가능
 - ※ 변경 예정 교·강사 점수가 기존 교·강사 점수보다 낮을 경우 별도의 심사(부산인자위)를 통해 변경 인정 여부 판단

□ 훈련기관의 모니터링 · 컨설팅

- (부산인자위) 훈련과정의 운영현황 수시 모니터링
 - 훈련과정의 개설현황, 훈련 실시인원 등을 토대로 훈련과정 개설 지연 등이 확인 되는 경우 훈련기관 컨설팅 지원
 - 참여훈련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우수사례 공유 및 지원사항·개선사항 등 논의

□ 훈련기관 지도 · 감독

- (고용센터) 민원 등이 발생(신문고, 전화제보 등)하는 경우 조속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수시·특별감독 실시*
 - *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항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조치

□ 기타 사항

- 훈련과정 승인, 카드발급, 훈련생 등록 등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준수

5 기타사항

□ 훈련과정 유효기간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개설되는 훈련과정은 유효기간(개설가능기간)을 1년으로 제한
 - 아울러,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최대 1년 이하로 제한
 -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고용센터에서 인정 처리한 일자

□ 훈련과정 재인정 특례

- 2022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을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훈련가능인원의 60% 이상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 부산인자위의 재심사 등 없이 절차**에 따라 훈련과정의 유효기간(1년) 및 훈련가능인원(기준 한도 내)에서 재부여

* (훈련실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훈련생 명단이 확정된 것을 의미

** ①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이전, 부산인자위에 유효기간 연장 및 훈련가능인원 재부여 신청

② (부산인자위) 특례 요건 해당 여부 확인 후, 적정한 경우 훈련기관에 HRD-Net상 훈련과정 등록 처리 및 인정 신청 안내 및 특례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 요청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③ (고용센터) 부산인자위로부터 공문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과정 인정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기관 등에 통지

□ 훈련과정 성과의 활용

- ‘23년 이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에 있어 기존에 운영 이력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적정(승인) 여부 판단 근거 활용
- 훈련기관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별도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23년 이후)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관의 역량평가’ 점수 산출 근거 활용

* (역량평가) 훈련기관별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등을 산출 및 평가하여 저평가 기관은 참여 배제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

- 2022. 9. 13.(화)~26.(월)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과정일람표 사전 제출 필수**
 - 제출기한: 2022. 9. 19.(월) 12:00(정오)까지
 - 제출방법: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메일(busanhrd@korcham.net) 제출
 - 제출내용: 2022년 제4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일람표
 - (파일명) 2022년 제4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일람표_훈련기관명
 - 훈련과정일람표 제출 시 '훈련기관 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서' 제출
- ※ 기한 내 훈련과정일람표 미제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청 관련 서류
 - 2022년 제4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청 공문 1부(별도 제출)
 - 2022년 제4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6부(제본)
 - 시간표를 포함하여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모두 제본하여 제출
 - 2022년 제4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시간표(excel)
 - 2022년 제4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청서 전자파일(USB) 1개
 - 전자파일에 신청 공문, 훈련신청서, 시간표(excel)를 각 1부 수록하여 제출(※ e-mail 제출 불가)
- 기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요청 서류 등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당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문 의 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Tel. 051-990-7052~7058)

7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주요업무	상세내용	일정
제4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모집 공고	○ 부산인자위 홈페이지 공지	9. 13(화)~26(월)
↓		
제4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계획서 신청, 접수	○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제출 - 훈련과정일람표 사전제출: 9. 19.(월) 12:00(정오)까지	9. 13(화)~26(월)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	○ 훈련과정 적정성 및 훈련가능인원, 훈련비 심사	9월~10월
↓		
훈련과정 인정 처리	○ (부산인자위)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훈련과정 인정 처리	10월~
↓		
훈련과정 인정 통보 및 훈련생 모집	○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10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